

의안번호	2212478
의 퇴 인	박정훈의원
회 답 일	2025. 10. 14.
추 계 번호	25B469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감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¹⁾ 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9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감리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세 사유

□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제9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자격 증명 등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관리시스템은 ① 공사의 감리 발주 ② 감리원 배치 및 교체 신고, 감리원 자격 증명 신청 및 발급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 한편,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각 시·도별로 감리원 배치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원의 이력이나 중복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리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행정안전부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감리원의 배치현황의 신고 등록과 대장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과 행정처분내역, 감리원 배치 현황 등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서울행정시스템은 245개 지자체별 개별DB로 관리되고 있어 감리원의 중복관리는 불가함
 -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²⁾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내용에는 감리원 중복조치를 위한 기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감리관리시스템은 현행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중복 조회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추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현행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이 아닌 신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현행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에 추가되는 기능 또는 서비스의

2) 2025년 ISMP 수립(관련 예산 9억 2,900만원 편성)을 완료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업 예산이 미편성됨

내용,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현행 시스템의 확대 규모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